

표창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규칙 제9장 제21~23조의 시행을 위하여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조명 및 전기설비의 학술 및 기술에 관하여 뛰어난 업적을 이루도록 가치를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상) 본 학회의 포상은 자랑스러운 최고기술인상, 공로상, 학술상, 논문상, 학술대회 발표상에 준하는 표창으로 한다.

제3조(공로상) 공로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조명 및 전기설비 학술 및 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2. 본 학회에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공헌한 자

제4조(학술상) 학술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조명 및 전기설비에 관한 학술 및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술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2. 학회지 및 저서를 통하여 조명 및 전기설비에 관한 학술보급과 계몽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제5조(논문상) 논문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우수한 논문의 저자
2. 논문은 전년도 총회다음 월호부터 당해년도 총회 전 월호까지 본 학회지의 논문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학술대회발표상) 학술대회 발표상은 본 학회 정회원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춘·추계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한 원고
2. 수상자 선정은 대회시 좌장회의에서 선정한다.
3. 수상은 정기총회시 수여하되, 추계와 총회를 도시 개최시는 추후 개별로 상장을 송부 한다.

제7조(기술상) 기술상은 본 학회의 특별회원 및 협찬업체, 전시회 참여업체 구성원 중에서 조명 및 전기설비에 관한 제품, 설비의 신기술 개발 등으로 현저한 결과를 나타낸 자에게 수여한다.

제8조(특별상) 기부자의 출연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조명·전기설비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에게 표창하며, 상의종류 및 상금 등은 별도의 특별상 수여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자랑스러운 최고기술인상) 자랑스러운 최고기술인상은 학회에서 최고 권위 있고 명예로운 학회상으로 학회 전반 업무에 오랜 기간 현저한 업적과 공로가 있으며, 덕망과 인품이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10조(수상의 제한) 과거의 수상자는 동일 종류의 상에 대하여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5년(학술상의 경우 7년) 이내에는 재 수상 할 수 없다.

1. 본 규정은 1987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6년 10월9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4년 09월 03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